



: 2018-09-21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18누4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53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655,740원¹⁾ 및 지방교육세 7,835,490원²⁾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별지 표 중 '취득세 추정처분'의 '본세'란 합계금액에 해당한다.

2) 별지 표 중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본세' 및 '가산세1'란 합계금액에 해당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655,740원 및 지방교육세 7,123,180원³⁾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16. 12. 8.자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7,835,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7,123,1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항소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항소한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6. 8. 수도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7. 10. 전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2년 11월보다 약 5개월 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 6월~7월경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별지 표 중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본세'란 합계금액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K, L 토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급수청약 신청 및 용수구 설치에 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용승낙을 한 사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2012. 7. 10. 전기 사용 전 검사 확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수도의 사용승낙 및 전기의 사용 전 검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즈음부터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12년 6월~7월경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소장에서 2012. 11. 15. 이 사건 각 건물을 준공하여 2012년 11월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모텔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시기는 제1심 판결이 판단한 바와 같이 2012년 11월경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복형



.
: 2018-09-21

판사 지창구

판사 이민영



: 2018-09-21

별지

이 사건 각 처분의 표시

(단위: 원)

부동산	취득세 추정처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합계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1	가산세2	가산세 합계	
■시 K 지 상 건물	44,506,370	16,698,780	2,543,220	254,320	445,570	699,890	64,448,260
■시 L 지 상 건물	44,506,370	16,324,930	2,543,220	254,320	424,200	678,520	64,053,040
■시 M 지 상 건물	35,643,000	11,780,010	2,036,740	203,670	265,790	469,460	49,929,210